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3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△△△, ******-*******

2. 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고발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

○ △△△는 가상자산사업자인 □□□의 □□□ 계정을 통해 '**.**.**.~ '**.**.**. 기간 중 ○○○ 등 00개 가상자산에 대해 사전 매집하고,

-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오전 9시에 대량·고가 매수주문을 1~10회 제출하여 가격 상승률 1~2위로 올린 후

- 지정가 매도주문 제출을 통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

[호가관여율 : (평균) **.**%, (최대) **.**%, 부당이득 : *********원]

나. 근거법규

□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3항, 제19조제1항제3호